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이던 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보험사업단 소관이던 정보화 및 전산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소관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감사담당관”을 “경영기획실장·디지털 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제19호 및 제19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혁신 업무 총괄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제9조제3항제7호, 제22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인재개발원·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3,280”을 “33,212”로 하고, 일반직 계 “33,275”를 “33,2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256”을 “33,18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본부장 밑에 <u>경영기획실장 · 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u>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영기획실장 · 디지털혁신담당관 · 감사담당관</u> -----.
제5조(경영기획실장) ① (생 략)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2. <u>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u> 3. ~ 18. (생 략) 19. <u>우정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 · 활동 총괄</u> 19의2. <u>우정사업 정보화 업무 총괄</u> 20. ~ 22. (생 략) 23. 삭 제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5조(경영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1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20. ~ 22. (현행과 같음) 24. <u>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u> 25. <u>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u> 제7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u>디지털</u>

	<u>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u> <u>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u> <u>1. 디지털혁신 업무 총괄</u> <u>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u> <u>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u> <u>4. 디지털우정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u> <u>5. 디지털금융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u> <u>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u>
<u>제7조 · 제7조의2 (생략)</u>	<u>제7조의2 · 제7조의3 (현행 제7조 및 제7조의2와 같음)</u>
제9조(우편사업단) ① · ② (생략)	제9조(우편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운영 계획 수립</u>	<u><삭 제></u>
8. ~ 21. (생략)	8. ~ 21. (현행과 같음)

<u>22.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u> 23. · 24. (생략) <u>2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0조(예금사업단) ① · ② (생략)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13. 우체국 예금의 정보화 · 전산개발 계획 수립</u> 14. ~ 18. (생략) 제11조(보험사업단) ① · ② (생략)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12. 우체국보험의 정보화 · 전산개발 계획 수립</u> 13. ~ 20. (생략) 제13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u>우정공무원교육원 · 우정사업정보센터</u>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u><삭 제></u> 23. · 24.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조(예금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14.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험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3. ~ 20.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속기관) ① ----- ----- ----- <u>우정인재개발원 · 우정사업정보센터</u> ----- -----.
---	--

② (생 략) 제3장 <u>우정공무원교육원</u> 제14조(직무) <u>우정공무원교육원</u>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9. (생 략) 제15조(원장) ① <u>우정공무원교육원</u> <u>원</u>에 원장 1명을 둔다. ②·③ (생 략)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u>우정공무원교육원</u>에 두는 보 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 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u>우정인재개발원</u> 제14조(직무) <u>우정인재개발원</u>--- -----. 1.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장) ① <u>우정인재개발원</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하부조직) ----- ----- ----- -- <u>우정인재개발원</u>-----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우정사업본부 직제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280</u>	<u>33,212</u>	-68	
일반직	계			<u>33,275</u>	<u>33,212</u>	-6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256</u>	<u>33,188</u>	-6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